

1. 개정이유

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(법률 제13278호, 2015.3.27. 제정, 2016.9.28. 시행)됨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유형을 명확히 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무원 재직 중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한 취업청탁 및 공직유관단체에 가족채용 및 인사청탁 금지 명문화(안 제9조제3항)
- 나. 거래시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명문화(안 제12조의2)
- 다. 공용재산 사적 사용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(안 제13조제2항)
- 라. 부패공직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 마련(안 제20조제3항)
- 마. 비위행위 징계처분자에 대한 청렴교육 의무화 규정 마련(안 제20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

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공무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하여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) 공무원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,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물품,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비위행위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에 대해 징벌적 환수금(공용 재산상 손해금액이내)을 환수조치할 수 있다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2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징계 처분을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인사청탁 등의 금지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9조(인사청탁 등의 금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공무원은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하여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 <p><u>제12조의2(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) 공무원은 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,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물품,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
<p>제13조(공용물의 사적 사용 · 수익의 금지)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13조(공용물의 사적 사용 · 수익의 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에 따라 관련 비위행위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 사용에 대해 징벌적 환수금(공용 재산상 손해금액이내)을 환수조치할 수 있다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적용하지</u></p>

제20조(징계 등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아니한다.

제20조(징계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징계 처분을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